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32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3285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102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한솔, 홍승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민현

변론 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1024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항 또는 나.항과 같이 청구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¹⁾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213,784,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C과 피고가 2022. 2. 14.부터 2022.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집행하는 순서 및 금액에 관하여 한 변제충당합의와 C의 피고에 대한 2022. 2. 15.자 910,117,224원에 관한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를 각 213,784,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8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및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M을 운영하는 N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여 준 회사이고, C은 N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C"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 및 그 이하의 "피고 D"을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원인으로 하여" 다음에 " 2022. 2. 14."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3행의 "다음날부터"를 "다음 날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9행부터 제6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3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앞에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14행 및 그 이하의 "증인 H"를 "제1심증인 H"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6행의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을다 제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별지 3-1 '매매목적물 관련 부담'에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경우 약정금 2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21카단 260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O은 C에 대한 추심금 202,716,438원을 청구채권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단1246호로 C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22. 1. 20.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C은 2022. 2. 14. 위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하여 202,716,438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보관되어 있던 P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한편 2022. 2. 14. 위 P 명의 계좌에서 Q 주식회사에 299,561,060원이 지급되었다[갑 제27, 28, 29호증, 을다 제3호증(33면), 이 법원의 P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어 이들 모두가 매도인 지위에 있었다. 피고가 P 명의 계좌에 입금한 매매대금으로 C 또는 G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졌고, 그 잔액 중 1,019,350,873원이 2022. 2. 23. G에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G, 시공사인 R 주식회사의 요청과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S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갑 제9 내지 12, 29호증, 갑 제16, 17, 20, 21, 22호증, 을다 제3호증, 이 법원의 P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 제1심판결문 제8면 13행의 "때문으로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인식하고 있던 O에 대한 채무는 '약정금' 200,000,000원에 관한 것이고, O의 '추심금'에 기한 가압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점, C이 위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한 공탁과 동시에 O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Q 주식회사에 299,561,060원을 지급한 것을 보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회수한 해방공탁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C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해방공탁금 202,716,438원이 매매대금에서 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부터 16행의 "망라되어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3-1 및 별지 5-1 등을 통해 그 무렵 알 수 있었던 C의 주요 채권자들과 채권액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고[갑 제27호증은 그 내용에 2022. 2. 23.까지의 경과가 반영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별지 3-1 및 별지 5-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확정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를 재원으로 변제된 채무액의 규모 및 그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C이나 피고가 확인서 청구대상에서 원고를 굳이 제외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인 2022. 9. 15.경에야 C로부터 원고의 확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다 제6호증, 원고가 제출한 2024. 10. 11.자 참고서면의 첨부서류 1에도 원고의 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다) 등을 감안하면, C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로 원고를 배제하거나 2021. 12. 22. 이후의 권리침해사함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행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C로부터 고지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C의 다른 채권채무관계나 일반적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 C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로 책정되었다거나 C이 다른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원고나 H를 해칠 의사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019,350,873원이 G에 지급된 것을 볼 때(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G와 C의 공유지분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변제된 채무에는 G와 C의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전체 매매대금 중 G와 C에 각 귀속되기로 예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G에 지급된 위 1,019,350,873원이 매도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H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원인이 변제할 채무의 규모에 비추어 매매대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2. 1. 26.경 H의 채권액이 40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의 2024. 10. 11.자 참고서면 기재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조 (4)항에서 매매대금 중 확인서 징구대상인 채권자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잔금 지급 즉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계약 체결 후 확인되는 채무액의 규모에 따라 매매대금을 증액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변제에 사용하고도 남은 매매대금이 존재하며 그 금액이 원고와 H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2)」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C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집행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장애가 되거나 새로운 부담을 인수하게 되는 채무들을 우선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2022. 2. 14.부터 2022. 2. 16.까지 사이에 피고와 한 변제충당합의와, ② C이 2022. 2. 15. 피고에게 910,117,224원을 증여하거나 피고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모두 C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변제충당합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9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조 (4)항에서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받는 당일 즉시 매수자의 직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를 대동하여 대출금융기관에서 매수인에 기 통보한 내역에 따라 각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전부 완료하여야 하며, 송금 전에 통보 내역과의 일치 여부에 대해 매수자 직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022. 2. 14.부터 2022. 2. 16.까지 사이에 G 또는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데, 그중 원고에 대한 변제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이를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고와 H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규모인 점(피고가 원고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②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4)항 규정은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매도인들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매도인 측이 통보한 채무의 내역과 실제 채무변제(송금)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통보받은 채무의 변제 여부 내지 금액을 정할 권한이나 통보받은 것 외에 다른 채무의 존재를 탐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소극적 확인을 넘어 별도로 C과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2022. 2. 14.부터 2022. 2. 16.까지의 변제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거나, 위와 같이 변제받은 다른 채권자들이 C과 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익을 위해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의 순서나 금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설령 C의 위 채무변제에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 또는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910,117,224원이 2022. 2. 15.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1호증, 을다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4,451,0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그중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2)항에 따라 유보된 금액이 550,400,00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 하자보수유보금 300,000,000원 + 2월분 임차료 유보금 50,400,000원)이므로, 피고가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금액은

13,900,608,000원(= 14,451,008,000원 - 550,400,000원)이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는 P 명의 계좌로 2022. 1. 6. 계약금 1,325,000,000원을 송금하고, 2022. 2. 14. 잔금 명목으로

1,985,725,224원 및 11,5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결국 910,117,224원(=

1,325,000,000원 + 1,985,725,224원 + 11,500,000,000원 - 13,900,608,000원)을 초과

지급한 점, ③ 이에 G 등이 P에 '매매대금 초과입금분' 910,117,224원을 피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P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1면), P은 위 요청에 따라 2022. 2. 15. 피고 명의

계좌로 910,117,224원을 송금한 점, ④ C이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다른 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22. 2. 15.자 910,117,224원 송금이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위 910,117,224원은 애초에 법률상 원인 없이 C 측에 지급된 것으로서 C 측은 이를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돈을 C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와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표현덕

판사박지연

판사이병호

별지

- 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 및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 2) 위와 같이 설령 원고가 2024. 10. 11.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2024. 10. 11.자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